

【 5 】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4. 9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함.
(안 제4조1항)
- 나.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 (안 제4조제2항)
- 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 라.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 (안 제6조)
-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보조가 가능토록 함 (안 제7조)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 계 법령 발췌 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법제8조제2항 및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제3조관련)

다. 문화 및 접회시설

- (2) 공연장(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접회장(예식장 · 공회장 ·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 (4) 관람장(경마장 ·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 · 구기 · 블링 · 수영 · 스케이트 · 로울러스케이트 · 승마 · 사격 · 궁도 ·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관련)

편의시설의종류	설 치 기 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조관련)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제정

□ 개정구분 : 제정

□ 제정이유

-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경기도 표준조례(안) 시달.

□ 주요골자

-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의 50%이상을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함.
(안 제4조1항)
- 나.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 (안 제4조제2항)
- 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 라.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 (안 제6조)
-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보조가 가능토록 함 (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복임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 내지 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제4조
[별표 1, 2]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별표 1]

관련사업계획서 : 없음

예산수반사항 : 없음

입법예고 : 2004. 8. 27 ~ 9. 15일까지(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